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-16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2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,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일을 자치구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보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, 시행령 제7조의2항이 규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월 2회 두 번째·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.

## 3. 주요토의과제

“없음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규제사항임.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2. 2. 16. ~ 2012. 3. 6.

- 의견 접수 : 1건 접수(오진아 의원 외 3명 공동 제출)

- 의견 내용 : 의무휴업일을 둘째주·넷째주 일요일로 지정 요청.

2)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이상 없음(원안동의)

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안 1부.

4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마포구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. 다만, 연간 총 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.
2. 의무휴업일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월 2회로 하며,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휴업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에게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&lt; 신 설 &gt;</p> | <p><b>제14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</b> ①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마포구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업시간 제한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로 한다.</li> <li>2. 의무휴업일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월 2회로 하며,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휴업일로 한다.</li> </ol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에게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 |